

# 한국대학미식축구협회(KAFUA) 정관

##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명칭)

본 협회의 명칭은 한국대학미식축구협회(이하 "본 협회"라 한다)라 하고 영어표기는 'Korea American Football University Association'(KAFUA) 라 한다.

한국대학미식축구협회는 (사)대한미식축구협회(이하 "KAFA"라 한다)의 산하단체이다.

### 제 2 조 (소재지)

본 협회의 주사무소는 국내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 3 조 (목적)

본 협회는 미식축구를 대학교에 보급하고 경기력을 발전시킴으로써 학생의 건강과 체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체육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미식축구 정신을 통하여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하며, 국제교류를 통해 국위를 선양하고 국제친선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 4 조 (사업)

본 협회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고자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각 지역 대학교에 경기 단체의 증설
2. 경기단체의 등록 및 지도 육성
3. 국내외 경기의 주최, 주관 및 후원
4. 대회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해석
5. 보급에 필요한 홍보물의 간행 및 배포
6. 기타 본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 5 조 (이익의 제공)

1. 본 협회는 제4조에서 규정한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킨다.

2. 본 협회의 목적 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 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 2 장 회 원

### 제 6 조 (회원의 자격)

본 협회의 회원은 본 협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등록 신청서(팀은 대회 출전 신청서로 같음) 제출 및 등록비를 납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소속팀이 없는 선수 또는 코치의 등록), 팀 또는 단체로 한다.

### 제 7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2. 회원의 자격은 등록된 팀의 등록된 인원에서 대표자 1인이 참석하며,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3. 본 협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4. 본 협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대회 및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5. 기타 본 협회 규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제 8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본 협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4. 금액과 납부 방법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며 납입된 회비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5. 회원은 외국(팀, 코치, 선수, 단체)과 관련된 진행은 사전에 지역협회에 보고를 하고, 지역협회는 본 협회에 보고를 하고, 본 협회는 KAFA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 제 9 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지역협회를 통해 본 협회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제 10 조 (회원의 상벌)

1.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본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팀이나 개인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본 협회의 목적과 취지, 제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 8 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팀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할 수 있다.
3. 포상과 징계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 제 3 장 임 원

### 제 11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이사장 - 1인
3. 이사(이사장 포함) - 5인 이상 9인 이내  
(당연직 이사: 지역 협회장 4인, 임명직 이사(이사장이 임명): 4인 이내)
4. 감사 - 감사는 KAFA 감사가 겸하도록 한다.
5. 이사는 본 협회에 이사 회비를 납부하도록 한다. 회비의 금액 결정은 이사회에서 결정이 가능하다. 이사 회비에서 KAFA 대학담당 이사 회비를 납부하도록 한다.

### 제 12 조 (임원의 선임)

1. 임원으로 선임이 되면 총회에서 선임의 결과를 보고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7일 이내 KAFA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전후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 제 13 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임원의 해임이 결정되면 7일 이내 KAFA에 보고를 하고, 차기 총회에서 임원의 해임에 대한 결과를 보고한다.

1. 본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제 14 조 (임원의 선임 제한)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 제 15 조 (상임고문, 자문위원)

본 협회의 이사장은 본 협회의 목적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상임고문,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 16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단, 회장과 이사장 그리고 임명직 이사는 KAFA의 임기 기간과 동일하게 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이 가능하며 KAFA 감사의 경우 KAFA 임기와 동일하게 가능하다.

#### **제 17 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협회의 대외적인 명예직 직함이다.
2. 이사장은 본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가. 본 협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나.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다.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라. 본 협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 18 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1. 이사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최고 연장자인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잔여기간 동안 최고 연장자인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 **제 4 장 총 회**

#### **제 19 조 (총회의 구성과 의결권)**

1. 총회는 본 협회의 의결 기관이며 회원(등록된 팀의 등록된 인원에서 1인)으로 구성한다.
2. 총회의 의결권은 회원명부에 의거하여 팀 또는 단체가 각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3. 이사회에서 총회 의결 사항으로 결정하는 안건에 대해서 총회 의결권을 행사한다.
4. 회원은 대학협회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총회에서 자유롭게 제안할 권한이 주어진다.

#### **제 20 조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우편 또는 전자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각 지역협회에 통지하고, 지역협회는 지역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본 협회의 공식 홈페이지(www.kafa.org)에도 공지하여야 한다.

#### **제 21 조 (총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나. 제 17조 제 3 항 '라'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다.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로 진행한다.

#### **제 22 조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정족수와 관계없이 성립이 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2. 의결권 및 출석에 위임은 주어지지 않는다.

#### **제 23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본 협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3. 결산과 예산의 승인
4. 신규 사업 및 본 협회의 발전을 위한 건의
5. 이사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기타 중요사항

#### **제 24 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회원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본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 5 장 이 사 회

### 제 25 조 (이사회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와 이사(당연직 이사와 임명직 이사)로 구성한다.

### 제 26 조 (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이사회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우편 또는 전자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본 협회의 공식 홈페이지(www.kafa.org)에도 공지하여야 한다.
4. 이사장과 이사들이 긴급하게 이사회회의 진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단체대화방(SNS나 온라인)을 통해 이사회회의를 진행하고 의결을 할 수 있다.

### 제 27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나. 제 17조 제 3 항 '라'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이사회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회의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회의의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로 진행한다.
4. 감사는 이사회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 제 28 조 (서면의 금지)

이사회회의에 참석한 이사(위임 포함)의 의결권만 인정된다. 서면 의결 제출은 금지한다.

### 제 29 조 (의결 정족수)

1. 이사회회의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불참 또는 공석인 경우는 재적이사 중에서 최고 연장자)이 결정한다.
2. 이사회회의의 의결권은 당연직 이사의 경우에만 지역협회의 임원(전무이사, 사무국장, 차기 지역협회 협회장에 한 함)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임명직 이사는 위임을 할 수 없다.

### **제 30 조 (이사회 의결 사항)**

1.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가.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나.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다.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라. 본 협회의 규정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마. 본 협회의 재산에 관한 사항
    - 바.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 사.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 아. 회원의 상벌과 임시 제재처분(자격정지)등에 관한 사항
  - 자.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차. 기타 본 협회의 운영에서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이사장이나 이사가 본 협회와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제 6 장 재산 및 회계**

### **제 31 조 (재산의 구분)**

1. 본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가. 기본재산은 본 협회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명시한 재산을 말한다.
  - 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을 말한다.

### **제 32 조 (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 협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폐기를 포함한다)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 33 조 (수입금)**

본 협회의 수입금은 이사회 의결권이 있는 이사의 회비, KAFA 지원금, 기부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지원금과 회비의 금액 산정은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총회에서 의결하도록 한다.

### **제 34 조 (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 35 조 (예산편성)**

본 협회의 수입, 지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제 36 조 (결산)**

1. 본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KAFA에 보고하여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를 한다.
2. KAFA에 보고하여 KAFA 감사로부터 의결이 되었다면, 총회에서 결산 보고가 결산 승인이 된 걸로 간주한다.
3.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은 본 협회의 공식홈페이지([www.kafa.org](http://www.kafa.org))를 통해 매년 공개한다.

### **제 37 조 (회계감사)**

감사(KAFA 감사가 겸임)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 38 조 (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제 7 장 사무부서**

### **제 39 조 (사무국)**

1. 본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 **제 8 장 보 칙**

### **제 40 조 (법인해산)**

1.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KAFA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본 협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KAFA에 귀속한다.

**제 41 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KAFA에 보고를 한다.

**제 42 조 (업무보고)**

당해 연도의 예산서와 전년도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KAFA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KAFA 감사가 감사를 하도록 한다.

**제 43 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2020년 2월 22일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 후 KAFA에 보고한 날(2020년 2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 (설립)**

본 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한다.